통합교육 및 장애인식개선

1

특수교육에서 말하는 통합교육 이란?

통합교육이란?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최소한의 분리교육을 실시하여 또래 친구들과 필요한 수 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방식입니다. 통합교육의 긍정적인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사회성과 의사소통능력을 발달시키는 기회를 얻게 됨
- 2. 우리학교 학생들은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바른 인성교육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배움

특수교육 관련 용어 및 장애 이해

특수교육 대상자

법 제 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

통합교육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급에 설치된 학급

정신적 잠애 정신장애 정신장애발달장애 신체적 장애 자패성장에 외부신체 가능의 장애내부기관의 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에 뇌병번 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에 안면장애 신장장애 호흡기 장애 심장장애 장루 요루장애

간장에 간절장에

장애인 복지법



특수교육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을 했다고 해도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닐 수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라고 해서 모두 장애인은 아닙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학생이어도 장애등록을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Ш

장애인 차별 금지법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2007년 4월 10일 제정되어 1년 후인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 - 위반시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이하의 징역



교육(제13조, 14조)

장애인의 입.전학을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 또한 모든 교육 활동에 있어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거부할 수 없으며 교육책임자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동 및 교통수단(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장애인이나 보조 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출입 및 사용을 거 부해서는 안 되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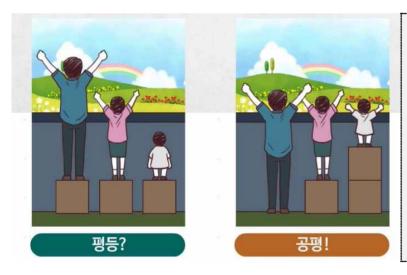


괴롭힘의 금지(제32조)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 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거나 학대 및 금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



Ⅳ 평등과 공평 ?!



평등은 똑같은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키가 큰 사람과 키가 작은 사람에게 평등한 발판을 제공한다면 키가 작은 사람은 밖의 풍경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반면 키가 큰 사람과 키가 작은 사람에게 맞는 발판을 제공한다면 모든 사람이 멋진 밖의 풍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같은 기회가 제공될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요?

▼ 통합교육 Q & A!

◎ 선생님, 장애학생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 장애학생의 분리교육(특수학교나 전일제 특수학급)이 학습적인 면이나 감각적인 면에서는 발전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목표는 개개인이 가진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켜 학생이 사회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습니다. <u>장애학생들도 결국에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사람들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u> 따라서 학교교육에서부터 장애학생들을 통합시켜 교육해야 합니다.

- ◎ 선생님, 장애학생이 통합학급(일반 반)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 보다 특수학급에서 한 가지라도 더 배우는 것이 낫지 않나요?
 - 장애학생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수업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규칙이나 수업시간에 지켜야 할 예절 등을 익힙니다. 그리고 <u>또래 학생들이 보여주는 행동과 태도가 장애학생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모델</u>이 될 수 있습니다.
- ☑ 장애 진단을 받지 않고 일반학급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요. 누가 봐도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호자에게 장애 진단을 받고 특수교육대상자로 등록하라고 강요할 수 있나요?
 -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보호자의 결정입니다. 학생이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장애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호자가 진단을 거부하면 특수교육대상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 다. 학교현장에서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만큼 장애정도가 심하다 하더라도 보호자의 동의 없이 특수교육대상자로 등록할 것을 강요 할 수 없습니다.
- ◎ 아이가 장애학생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데 뭐라고 말해주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 장애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도와줄 필요는 없습니다. 장애학생이 할 수 있는 것과 해내기 어려워하는 것을 살펴본 후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라고 말해주세요. 장애학생에게 말을 할 때에는 <u>간단하고 명료하게 이야기</u>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세요. 그리고 장애학생을 도와 준 아이들에게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해주세요.

장애인은 dis/abled/person(불/가능한/사람)이 아니라 This/abled/person(여기/할 수 있는, 가능한/사람)입니다.